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74
----------	------------

제안연월일 : 2025년 12월 17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 인용된 조례 제명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용어 수정 및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6조의4)
- 다른 조례에 인용된 조례 제명 개정(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중장년 생애재설계”로 한다.

안 제6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서울특별시 중장년층</u> <u>인생이모작 지원에</u> <u>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중장년</u> <u>생애재설계 지원에</u> <u>관한 조례</u>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중장년층</u> <u>의 인생이모작 지원</u> <u>에 관한 사항을 규정</u> <u>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중장년</u> <u>생애재설계 지원에</u> <u>관한 사항을 규정함</u> <u>으로써 시민이 안정</u> <u>적인 노후생활을 영</u> <u>위할 수 있도록 복리</u> <u>증진과 사회참여를</u> <u>위한 지원에 필요한</u> ----- -----. -----.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2. “ <u>인생이모작</u> ”란 은	1. (현행과 같음)  2. “ <u>생애재설계</u> ”란 ---	(개정안과 같음)

<p>퇴 전후에 새로운 인 생을 위한 준비 및 성 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 한다.</p>	<p>----- ----- 와 안정적----- ----- ---.</p>	
<p>3.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u>인생이모작</u>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p>	<p>3. <u>생애재설계</u> ----- (개정안과 같음) ----- <u>생애재설계를</u> ----- ----- ----- -----.</p>	
<p>제3조(시장의 책무) 서 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u>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 ----- ----- ---- <u>생애재설계</u> -- ----- ----- ----- ----- --.</p>	<p>제3조(시장의 책무) -- ----- ----- <u>중장</u> ---- <u>년 생애재설계</u> ---- ----- ----- ----- ----- ---.</p>
<p>제4조(지원사업) ① 시 장은 <u>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사업) ① -- --- <u>중장년 생애재설</u> <u>계</u> ----- ----- ----- ----- -----.</p>	<p>(개정안과 같음) ----- ----- ----- ----- ----- -----.</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u>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u>	<u>&lt;삭 제&gt;</u>	(개정안과 같음)
<u>3. (생 략)</u>	<u>2. (현행 제3호와 같음)</u>	(개정안과 같음)
<u>4. 건강증진 지원사업</u>	<u>4. 경력설계 상담 --</u>	(개정안과 같음)
<u>&lt;신 설&gt;</u>	<u>5.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증진사업</u>	(개정안과 같음)
<u>&lt;신 설&gt;</u>	<u>6.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지원사업</u>	(개정안과 같음)
<u>&lt;신 설&gt;</u>	<u>7. 중장년층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사업</u>	(개정안과 같음)
<u>&lt;신 설&gt;</u>	<u>8.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u>	(개정안과 같음)
<u>5. (생 략)</u>	<u>3. (현행 제5호와 같음)</u>	(개정안과 같음)
<u>6. (생 략)</u>	<u>9. (현행 제6호와 같음)</u>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u>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 <u>생애재설계</u> ----- ----- ----- ----- -----.	(개정안과 같음)
제6조( <u>인생이모작</u>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 <u>생애 재설계</u>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개정안과 같음)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	① ----- ----- -----.	

<p>로 추진하기 위하여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  다)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p>	<p>-----  <u>생애재설계</u> -----  -----  -----  -----.  -----.</p>	
<p>(② (생 략)</p>	<p>-----  ②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의2(<u>인생이모작</u>  <u>지원시설의 구분</u>)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 · 운영하는 <u>인생</u>  <u>이모작</u>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  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p>	<p>제6조의2(<u>생애재설계</u>  <u>지원시설의 구분</u>) --  -----  ----- <u>생</u>  <u>애재설계</u> -----  -----  -----  -----.  -----.</p>	<p>(개정안과 같음)</p>
<p>1. · 2. (생 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의3(사용료의 부  과 · 징수) ① 시장은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  을 사용하거나 이용  하는 사람에게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용료 등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p>	<p>제6조의3(사용료의 부  과 · 징수) ① -----  <u>생애재설계</u> -----  -----  -----  -----  -----  -----.  -----.</p>	<p>(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징  수된 사용료 등은 <u>인</u></p>	<p>② -----  ----- <u>생애</u></p>	<p>(개정안과 같음)</p>

<u>생이모작</u>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u>재설계</u> ----- ----- ----- ----- ----- ----- -----.	
제6조의4(사용료의 감 면 등) 시장은 제6조 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u>인생 이모작</u>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 7. (생 략)	제6조의4(사용료의 감 면 등) ① ----- ----- ----- ----- ----- <u>생애재설계</u> ----- ----- -----.	제6조의4(사용료의 감 면 등) ----- ----- ----- ----- ----- <u>생애</u> <u>재설계</u> ----- ----- -----.
제6조의5(사용료의 반 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u>인 생이모작</u>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의5(사용료의 반 환) ----- ----- ----- ----- <u>생애</u> <u>재설계</u> ----- ----- ----- ----- -----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p>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u>인생이모작</u> 위원회를 둔다.</p> <p>1. · 2. (생 략)</p> <p>3.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p> <p>4. (생 략)</p>	<p>-----</p> <p>-----</p> <p>----- <u>생애재설계</u>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생애재설계</u> -----</p> <p>-----</p> <p>4.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생이모작”이란”을 ““생애재설계”란”으로, “ 및 성공적”을 “와 안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인생이모작을”을 “생애재설계를”로 한다.

제3조 중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중장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중장년 생애재설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강증진”을 “경력설계 상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5.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6.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지원사업
7. 중장년층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사업
8.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제6조의 제목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인생이모작”을 각각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6조의5 중 “인생이모작”을 “생애재설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인생이모작”을 각각 “생애재설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인생이모작</u>”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li>3. “<u>인생이모작 지원시설</u>”란 중장년 층의 <u>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u>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li> </ol>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중장년 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p>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생애재설계</u>”란 ----- 와 안정적 -----.</li> <li>3. <u>생애재설계</u> ----- <u>생애재설계를</u> -----.</li> </ol> <p>제3조(시장의 책무) ----- <u>중장년 생애재설계</u> -----</p>

<p>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p>
<p>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u>중장년 층의 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사업) ① ----- <u>중장년 생애재설계</u> ----- ----- -----.</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u>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u></p>	<p><u>&lt;삭 제&gt;</u></p>
<p>3. (생 략)</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4. <u>건강증진</u> 지원사업</p>	<p>4. <u>경력설계 상담</u> --</p>
<p><u>&lt;신 설&gt;</u></p>	<p><u>5.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증진사업</u></p>
<p><u>&lt;신 설&gt;</u></p>	<p><u>6.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지원사업</u></p>
<p><u>&lt;신 설&gt;</u></p>	<p><u>7. 중장년층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사업</u></p>
<p><u>&lt;신 설&gt;</u></p>	<p><u>8.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u></p>
<p>5. (생 략)</p>	<p>3. (현행 제5호와 같음)</p>
<p>6. (생 략)</p>	<p>9.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시장은 <u>인생이모작</u>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p>	<p>② ----- <u>생애재설계</u> ----- ----- -----.</p>
<p>제6조(<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p>	<p>제6조(<u>생애재설계</u>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p>

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1. · 2. (생 략)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 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  
생애재설계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구분) -----  
----- 생애재설계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 생애재설계 -----  
-----  
-----  
-----  
-----.

② -----  
- 생애재설계 -----  
-----  
-----  
-----.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  
-----  
-----  
생애재설계 -----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 ----- ----- ----- ----- <u>생애재설계</u> ----- ----- ----- ----- -----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u>인생이모작</u> 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 ----- ----- ----- ----- <u>생애재설계</u>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인생이모작</u>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u>생애재설계</u>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